

대구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나316629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나31662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8. 25 선고 2019가단275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명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영희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라

담당변호사 권영규, 여인협

변론 종결2021. 7. 14.

판결 선고2021. 8. 18.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20. 8. 25. 선고 2019가단275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거나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1 유체동산에 관하여 2017. 12.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84,772,16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84,772,1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1 기재 유체동산에 관한 2017. 12. 28. 자 매매계약과 별지 목록 2 기재 유체동산에 관한 2018. 1. 12. 자 매매계약은 84,772,162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84,772,16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 감소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므로, 가액배상으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액 84,772,16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84,772,1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C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은 위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판결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채무초과 여부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이 사해행위가 있는 후에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경우에 그 부동산의 평가는 경락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산출된 감정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8, 2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제1심 법원의 I은행에 대한 2020. 1. 10.자 금융거래정보 회신 결과, 제1심 법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2020. 1. 13.자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7. 12. 28. 무렵 C은 아래 적극재산표 기재와 같이 4,508,501,111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반면 소극재산으로 아래 소극재산표 기재와 같이 4,812,137,308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②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8. 1. 12. 무렵 C은 아래 적극재산표 기재와 같이 4,381,638,402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반면 소극재산으로 아래 소극재산표 기재와 같이

4,887,477,923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적극재산>

1	경북 칠곡군 G 공장용지 6668.5m ² (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173,931,000	2,173,931,000
2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3,520.67 m ²	1,792,902,000	1,792,902,000
3	이 사건 토지 지상 제시외 건물 25.2m ²	5,040,000	5,040,000
4	제2, 3번 기재 건물 내 기계기구 5식	384,000,000	384,000,000
5	주식회사 I 예금	6,293,858	765,402
6	주식회사 기업은행 예금	1,334,253	0
7	이 사건 제1 유체동산	120,000,000 추정	25,000,000 추정
8	이 사건 제2 유체동산	25,000,000 추정	
합계		4,508,501,111	4,381,638,402

<소극재산>

1	중소기업은행	3,518,851,378	3,518,851,378	2018. 1. 26. 현재 대출원리금채무
2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6,000,000	16,000,000	2017. 11. 30. 기준 체납액
3	주식회사 H	627,930,798	627,930,798	2015. 1. 1. ~ 2017. 12. 31. 미수금
4	주식회사 I	68,885,430	68,885,430	2018. 1. 23. 집행된 가압류채무
5	구미세무서	10,540,000	14,123,370	2018. 2. 12. 교부청구된 종합소득세 체납액
6	(주)J	360,000,000	360,000,000	유치권 신고된 공사대금 채무
7	국민건강보험공단	5,088,020	8,215,140	2017. 12. ~ 2018. 2. 보험료 체납액
8	칠곡군	27,810	27,810	2018. 1. 10. 기준 등록면허세 체납액
9	K조합	50,000,000	50,000,000	2018. 4. 경 배당요구액
10	대구광역시 달서구	41,710	41,710	2018. 1. 10. 기준 등록면허세 체납액
11	E	70,000,000	70,000,000	제1심 증인 E 증언
12	주식회사 N	0	68,630,125	C에 대한 2018. 1. 2.자 외상미수금
13	원고	84,772,162	84,772,162	이 사건 판결금 채권
합계		4,812,137,308	4,887,477,923	

다) 원고는, 이 외에도 C의 M에 대한 채무액 50,000,000원, O에 대한 채무액 100,000,000원, P회사에 대한 채무액 50,000,000원을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고(적극재산 약 4,508,501,111원 - 소극재산 4,812,137,308원 = -303,636,198원),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도 C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적극재산 약 4,381,638,402원 - 소극재산 4,887,477,923원 = -505,839,522원)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사해행위 여부 앞서 든 기초사실, 앞서 든 근거,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유체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데 이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 일부를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인 점, C이 피고로부터 매도대금 145,000,000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그 중 수표금 10,000,000원을 ○ 주식회사에게, 수표금 10,000,000원을 Q회사에게 각 지급하고, 36,818,720원 상당을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1), 7,000,000원을 주식회사 H에게, 11,454,000원을 ○ 주식회사에게, 5,000,000원을 R회사에게 각 입금하여, 총 합계 80,272,720원 상당이 거래처에 대한 채무 변제 및 임금 지급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64,727,280원이 거래처에 대한 채무 변제 또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C이 자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F)이 이루어졌던 2018. 1. 30. 전후로 이 사건 유체동산을 매도한 점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해의사 여부

1) 사해의사의 추정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행위는 C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관련 법리에 따라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도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C의 채무초과 상태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앞서 등 증거, 제1심 증인 A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당시 C이 운영하던 D은 보유하던 기계 중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유체동산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피고에게 판매했고, 이 사건 유체동산이 2018. 1. 1. D에서 반출되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D 공장이 폐쇄된 점, ②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될 당시 C이 거래처인 인쇄 및 지류판매, 포장, 기계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물품대금을 연체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1. 30. 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F)이 이루어진 점, ③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피고의 직원인 AD 이사와 AE회사 AF 상무의 친분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위 ①, ② 사정을 더하여 볼 때, 포장기계매매업을 하는 자인 피고로서는 C이 채무초과 상태이거나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1) 관련 법리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법칙 또는 거래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참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을 모두 매도 또는 처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고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에 의함이 상당하다.

나) 가액배상은 ①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②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목적물 가액 - 피담보채권액), ③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앞서 든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9, 10, 11,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제1 유체동산을 매수한 대금의 합계가 120,000,000원, 이 사건 제2 유체동산의 매수대금 합계가 25,000,000원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제1 유체동산을 처분한 대금의 합계가 138,740,000원이고, 이 사건 제2 유체동산을 처분한 대금의 합계가 46,1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84,772,162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유체동산의 공동담보가액 및 피고가 취득한 이익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84,772,162원 보다 많은 금액이므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은 84,772,16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84,772,1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므로, 원고가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액은

126,937,602원(= 2017. 11. 1.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5%에 의한 이자 2,450,263원 + 2018. 5. 31.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21. 7. 14.까지는 연 15%에 의한 이자 42,165,440원 + 원금 84,772,162원)인데, 원고는 그 일부인 원금 84,772,162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나아가 제2 유체동산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유체동산에 대한 취소만으로 원고가 구하는 판결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제2 유체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는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제1 유체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백정현

판사허이훈

판사김민지

별지

1) 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8.01.02.	2,000,000	S
2018.01.09.	190,000	T
2018.01.09.	128,000	U
2018.01.09.	128,000	V
2018.01.09.	128,000	W
2018.01.12.	317,000	X
2018.01.12.	4,236,300	W
2018.01.12.	3,463,000	V

2018.01.02.	2,000,000	S
2018.01.12.	2,557,000	U
2018.01.12.	3,445,500	Y
2018.01.12.	5,434,500	T
2018.01.12.	6,142,400	Z
2018.01.12.	5,891,020	AA
2018.01.12.	2,758,000	AB
	36,818,720	